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5.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9개 보호관찰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8명(9급 1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9명, 8급 9명)하여 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법무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0. ~ 6.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민정책연구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2항제5호 중 “선택·이탈 신고”를 “선택 신고, 국적 이탈 신고·허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12항제9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9조제1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려는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활용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6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신속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신속수사팀을 두지 않는 보호관찰소에서는 관찰과장이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의2호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3.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4.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위험도가 높은 자에 대한 현장 확인, 행동 관찰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항 중 “관찰과 및 집행과를,”을 “관찰과, 집행과 및 신속수사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제2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

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33조제10항제3호 전단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을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서울보호관찰소의 부서명란 중 “범죄예방정보화센터”를
“범죄예방정보화센터, 신속수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인천보호관찰소의
부서명란 중 “조사과”를 “조사과, 신속수사팀”으로 하며, 같은 표 수원보
호관찰소의 부서명란 중 “조사과”를 “조사과, 신속수사팀”으로 하고, 같
은 표 대전보호관찰소의 부서명란 중 “조사과”를 “조사과, 신속수사팀”
으로 하며, 같은 표 대구보호관찰소의 부서명란 중 “조사과”를 “조사과,
신속수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부산보호관찰소의 부서명란 중 “조사과”
를 “조사과, 신속수사팀”으로 하며, 같은 표 창원보호관찰소의 부서명란
중 “조사과”를 “조사과, 신속수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광주보호관찰소
의 부서명란 중 “조사과”를 “조사과, 신속수사팀”으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보 “5”를 “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
1”을 “1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서기보 “5”를 “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
보 “11”을 “13”으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주사보 “59”를 “60”으로, 공업서기보 “91”을 “92”로, 기계
운영주사보 “2”를 “1”로, 기계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7의2 중 공업주사보 “59”를 “60”으로, 공업서기보 “91”을 “92”로, 기계운영주사보 “2”를 “1”로, 기계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8 중 전산주사보 “1”을 “2”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1”을 삭제, 공업서기 “2”를 “3”으로, 기계운영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11 중 공업서기보 “2”를 “3”으로, 기계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무부령 제103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2025년 7월 1일”을 “2027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서울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서울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과장이, 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보호관찰소 및 지소의 관찰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주사보 9명, 보호서기 9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서기보 18명)으로 본다.

[별표 11의2]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 (제33조제7항 단서 관련)

총계	2,030
일반직 계	2,030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29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6
보호사무관	183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보호주사	342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전산주사	2
보호주사보	482
보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보호서기	495
보호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공업서기	4
운전서기	2
보호서기보	399
보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공업서기보	3
운전서기보	54
방호서기보	14
기계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⑦ (생략)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1. (생략) ⑨·⑩ (생략) ⑪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복수국적자의 국적 <u>선택·이탈 신고</u> ,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9. (현행과 같음) <u><삭제></u> 11.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8. (현행과 같음) <u>9. 이민정책연구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u> ⑫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선택 신고</u> , 국적 <u>이탈 신고·허가</u> -----

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9의2. 우수인재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10. (생략)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⑭ · ⑮ (생략)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2.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운영

6. ~ 9. (현행과 같음)

<삭제>

9의3.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⑬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⑭ · ⑮ (현행과 같음)

⑯ -----
-----.

1.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려는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

3.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관리 및 분석

4.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신 설>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⑤ (생
략)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 9. 삭 제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⑦ ~ ⑨ (생 략)

<신 설>

석에 관한 사항

3.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
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
된 빅데이터 분석활용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
한 사항

5.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신속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신속수사팀을
두지 않는 보호관찰소에서는 관
찰과장이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⑩ (생략)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② (생략)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u>관찰과 및 집행과</u>를,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	<u>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u> 2. <u>제1호의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u> 3. <u>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u> 4. <u>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위험도가 높은 자에 대한 현장 확인, 행동 관찰 등에 관한 사항</u>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관찰과, 집행과 및 신속수사팀을,</u> ----- ----- ----- ----- ----- ----- ----- ----- -----
--	---

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
과를 둔다.

④ ~ ⑦ (생략)

<신설>

⑧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⑥ (생략)

⑦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단서 신설>

⑧ · ⑨ (생략)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제23조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다만,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
의2와 같다.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원 중 의무직 1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약무직 3명(6급 1명, 7급 2명),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 6. (생략) 법무부령 제103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u>2025년 6월 30일</u>까지 존속한다.	----- ----- ----- ----- 6 <u>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u> ----- ----- ----- ----- ----- ----- ----- ----- ----- ----- ----- ----- 4. ~ 6. (현행과 같음) 법무부령 제103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 <u>2027년 6월 30일</u> -----
---	---

② (생 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보호사무 관 2명, 보호주사 3명)은 <u>2025년</u> <u>6월 30일까지</u> 존속하며, <u>2025년</u> <u>7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보호주 사 2명, 보호주사보 3명으로 본 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u>2027년</u> <u>6월 30일</u>----- <u>2027년</u> <u>7월 1일</u>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u>5</u>	<u>3</u>	-2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11</u>	<u>13</u>	+2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u>5</u>	<u>3</u>	-2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11</u>	<u>13</u>	+2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보			<u>59</u>		<u>60</u>	+1
	.		.		.	
	.		.		.	
공업서기보			<u>91</u>		<u>92</u>	+1
	.		.		.	
	.		.		.	
기계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3</u>		<u>12</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보			<u>59</u>		<u>60</u>	+1
	.		.		.	
	.		.		.	
공업서기보			<u>91</u>		<u>92</u>	+1
	.		.		.	
	.		.		.	
기계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3</u>		<u>12</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전산주사보			<u>1</u>		<u>2</u>	+1
	.		.		.	
	.		.		.	
<u>방송통신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공업서기			<u>2</u>		<u>3</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2</u>		<u>1</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2</u>		<u>3</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2</u>		<u>1</u>	-1
	.		.		.	